

이천시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

소관부서 : 행정지원과

제정 2011. 12. 1 훈령 제20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이천시 6급(상당)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실무직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실무직 공무원 : 이천시 소속으로 근무하는 6급(상당) 이하의 공무원
2. 대외직명 :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 중심의 용어를 선정·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

제3조(적용대상)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 선정·부여할 수 있으며,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직종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적용직종 : 일반직·기능직·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
2. 대상공무원 : 6급(상당) 이하 실무직 공무원

제4조(대외직명) 제3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.

제5조(대외직명의 사용) ①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. 다만,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공문서 기안문·시행문, 홈페이지, 민원창구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
 2. 공로패·감사패·표창 및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
- ② 직원 상호간에는 대외직명으로 호칭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훈령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